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약관상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을 중심으로 -

김 혜 영*

<차례> _____

- I. 서론
- II.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III. 검토
- IV. 결론

주제어: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자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정신장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국문초록> 현행 상법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해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위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은 위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다34956, 34963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법률사무소 광화 변호사.

- 논문접수일(2016.06.08), 심사개시일(2016.06.10), 게재확정일(2016.06.28)

I. 서론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32조의2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된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해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위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위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을 토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의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차례로 검토한 후, 이 건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

1)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에 앞서,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5다5378 판결이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은 당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사실관계와 1심과 항소심의 진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을 기초로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의미와 효력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

1. 사실관계

가. 망인은 2009. 9.경 원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정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모친인 피고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년경 부산에서 큰 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망인의 부친을 허위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로 등록하였다가 적발되어 6개월간 어린이집 운영 정지처분을 받고 벌금 4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양산으로 이사온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헛소리를 하였으며, 발작증세를 보였고 수십번에 걸쳐 자택 안방에 있는 장롱 문짝에 넥타이나 스카프를 걸고 목을 매려고 시도하였으며, 실제로 목을 맸다가 가족들에게 발견된 적도 있다.

라. 망인은 2012. 6. 20. A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 및 불안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7. 14.부터 같은해 11. 12.까지 사이에 B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9. 12.에는 대학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8. 24.부터 같은해 12. 13.까지 사이에 C신경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2012. 12. 17. 20:30경 남편과 딸들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안방의 장롱 문짝에 스카프를 걸고 목을 매어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보험회사의 주장

망인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한 스카프를 장롱 문짝에 고정하고 목을 맴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상해사고의 요건중 '우연상이 결여된 피보험자의 고의자살 사고에 해당되고 설령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는 정신상태에서 자살을 시도

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약관중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보험계약 체결당시 시행된 약관이고, 이후 약관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된 약관이 당해 보험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개정전 약관이 적용되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고, 설령 개정약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개정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를 이유로 면책된다.

나. 보험수익자의 주장

개정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약관에 규정되어 있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규정이 개정약관에서 삭제되는 등 보험약관이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이 전 보험계약에는 개정된 보험약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설령 개정전 약관이 이 전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이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 규정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책시키는 규정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및 약관규정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사건에서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 법률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나. 이 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규정

<보통약관>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다. 보험약관의 개정(2010. 4. 1.)

<보통약관>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1심 법원의 판단(울산지방법원 2014.09.17. 선고 2013가합8614, 2014가합3173 판결)

가. 이 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므로 보험기간중 보험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비록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 구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이 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정약관을 적

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건 약관이 변경될 당시 이 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정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조치가 취하여졌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개정약관이 이 건 보험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건 보험계약의 보장대상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손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건에서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망인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건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인 '상해에 의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 해당여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스스로 주거지 안방 장롱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이 건 사고는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이 2011년경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벌금 4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자 이로 인한 자책 등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② 망인이 2012. 2.경 양산시로 이사하면서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거나 헛소리를 하고 발작증세 등을 보였으며, ③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병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및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왔으며 마지막 병원 방문시에는 입원치료를 권유받기도 하였고, ④ 사망 6개월 전부터 환각과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하고 “아기를 누가 죽이고 있다. 아기도 같이 죽자고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였으며, 당시 3살이던 딸의 손을 잡고 죽으러 가자며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기도 하였고, ⑤ 거실에 비치된 물건을 부수거나 거실에 책과 종이를 마구 찢어두기도 하였으며, ⑥ 망인이 주거지 안방 장롱 문을 열어두고 그 밑에 쭈그려 앉아 스카프나 넥타이를 들고 목을 매겠다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몇차례 목을 매기도 하였고, ⑦ 이 건 사고당시 남편과 딸들이 함께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목을 댔으며, ⑧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로,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망인은 중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때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사고는 보험계약상 보장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하고,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내지 정신질환 해당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시하고 있는 법리인바, 이 건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와 같이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한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에도 그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보험자가 면책될 수밖에 없어 위 법리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고, ③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사고까지도 모두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어 위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④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을 개정하여 개정약관에서는 이 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였고, 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의 요체라고

할 것인데,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생명보험은 모두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바, 망인이 만일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자살의 경위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도 없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건 상해사망보험은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함에도 이 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되어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를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살이었던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를 들어 그 보험금 지급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5. 항소심 법원의 판단(부산고등법원 2015.05.12. 선고 2014나6824, 6831 판결)

항소심 판결은 별도의 판결이유를 실시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1심 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²⁾

2) 항소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실시되었는데, 진료기록감정은 ‘망인의 자살은 우울증 또는 비정형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의 심한 증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살로 볼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악화 또는 치료효과 감소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은 남편과 자녀 2인이 있는 자택에서 자살하였는데 본인의 자살로 인하여 남편이나 특히 어린 자녀들의 충격 등이 예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실행한 것과 그간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미루어 볼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6.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2015다34963 판결)

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해당여부

이 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중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6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 있다.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06.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부분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는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7.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2015나4863, 4870 사건)

파기환송심의 담당재판부는 원고 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III. 검토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상해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격한 사고라 함은 시간적으로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말하고,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뜻하게 않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외래의 사고라 함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신체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을 말한다.³⁾

대법원 2010.0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

3)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862면;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486면;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442면;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2016, 478면;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2판, 박영사, 1999, 682면;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633면.

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⁴⁾

자살이란 자신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데, 원래 보험사고 자체가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우연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의욕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결과발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고의의 결여가 곧 우연성의 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에서 자살이라 함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를 목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장애자의 자살이나 심신상실 중의 자살 또는 과실로 인한 사망 등은 자기가 생명을 끊는다는 의사 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자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⁵⁾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상태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간다고 풀이할 수 있다.⁶⁾

4) 이와 관련하여 상해사고의 급격성과 외래성은 보험금청구자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우연성은 보험자에 의한 반증이 없는한 추정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박세민, 앞의 책, 870면, 최기원, 앞의 책, 642면).

5)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168면.

6) 양승규, “생명윤리와 자살약관에 대하여”, 보험법연구 제2권 제2호, 2008, 19면.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이 부분에 대한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⁸⁾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살이 의식이 있는 ‘고의’에 의한 것 이어야 한다. 프랑스 입법의 경우에는 이에 의식적인 자살과 무의식적인 자살을 구분하여 보험계약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관과 판례를 통해 이를 구분하고 있다(고택근,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4권, 2008, 42면).

8)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은 각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근거로는 ① 자살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이며, ②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선의의 원칙이 중요한데 자살은 이 원칙에 반하고, ③ 자살을 면책사유로 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체결후 보험금 취득을 유일한 또는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자살을 감행하는 행위와 같이 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도덕적 해이 또는 역선택을 야기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④ 자살은 고의사고로서 보험사고의 우연성 및 불확정성 원칙에 반하고, ⑤ 자살을 면책사유로 하지 않게 되면 보험이 오히려 자살을 촉진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⑥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단체의 원리상 다른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어 死差益이 감소됨에 따라 계약자 배당이 감소하여 다른 소비자 보호에 문제를 야기하고, ⑦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인해 차후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⁹⁾

이와 같이 상법 및 보험약관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된다. 다만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¹⁰⁾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에서도 '피보험자의 고의'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살부책조항, 즉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약관에서 자살이 고의사

9) 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경과후의 자살 - 최근 일본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69집, 2004, 195면;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의 자살부책 조항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6권, 2015, 355면;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69권, 2004.

10)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11.04.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15.09.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고임에도 불구하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한 자살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자살의 목적과 보험금 수령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병적인 원인에 기초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없어 도덕적 위험과 거리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정상적일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가 자해나 자살당시 음주나 정신질환, 극도의 흥분 등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미약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해나 자살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해나 자살의사를 형성, 제어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로 형성된 자해, 자살의 고의를 일반적인 의미의 고의(어떠한 사실, 행위, 의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있는 정신상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3.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정신장애의 분류

의학상 정신장애는 정신증과 신경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신증은 현실 지각의 손상과 망상, 환청, 기억력의 장애, 사회적 위축, 일상적인 가사나 직업적인 역할 수행능력의 결여, 자아의 퇴행 등을 수반하는 정신기능의 장애로서 전반적 발달장애, 정신분열병, 정신분열형장애, 분열정동장애, 망상장애, 단기 정신증적 장애, 공유 정신증적 장애, 일반적 의학 상태로 인한 정신증적 장애, 물질에 의한 정신증적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증적 장애, 정신병적 양상을 가진 몇몇 심각한 기분장애 등이 해당된다. 신경증은 만성적인 혹은 반복적인, 정신병적이지 않은 장애로서 ‘불안을 특징으로 하고, 불안장애, 신체형 장애, 해리장애, 성(性)장애, 기분부전장애 등이 해당된다.¹²⁾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 개정판에서는 정신장애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11) 박세민, 앞의 논문, 357면.

1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제2판, 중앙문화사, 2005, 142면.

V. 정신 및 행동 장애(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F00-F99)	
포함 : 심리발달의 장애	Includes : Disorder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제외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R00-R99)	Excludes : 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NEC
이 장은 다음 항목군을 포함한다 :	
F00-F09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Organic, including symptomatic, mental disorders
F10-F19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
F20-F2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Schizophrenia, schizotypal and delusional disorders
F30-F39 기분[정동]장애	Mood [affective] disorders
F40-F48 신경증,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Neurotic, stress-related and somatoform disorders
F50-F5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	Behavioural syndromes associated with physiological disturbances and physical factors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Disorders of adult personality and behaviour
F70-F79 정신지연	Mental retardation
F80-F89 심리발달의 장애	Disorder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Behaviou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F99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Unspecified mental disorder

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¹³⁾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08.12. 선고 2004나72688 판결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되 다만 위 면책사유의 예외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고 있던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상태에 있었다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스스로 자살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살의사를 형성, 제어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위로 형성된 자살의 고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의(어떠한 사실, 행위, 의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있는 정신상태)와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 예외규정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로 인하여 이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러한 경우는 위 면책예외규정이 없더라도 직접 고의를 조각하여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외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정신장애로 인하여 그 고의를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를 구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자살은 자살자 본인 내외의 비정상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각한 병적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 일어난 대부분의 경우를 정신질환상태 하에서의 자살이라고 쉽게 보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자살자 주변의 상황 환경, 자살자의 태도, 병력, 자살의 경위·수단·방법·동기·목적 등을 탐지, 종합하여 자살자 본인이 과연 자살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자살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보험자가 종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평소 자살의 징후를 나타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살이 반드시 계획적이라거나 정신질환의 필연적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13) 대법원 2006.04.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대법원 2011.04.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이와 관련하여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에 관한 보험금 지급 사건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험 정책적 측면에서 유족보호의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생명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지만, 보험의 중요한 원리 역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고 특히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악화된 상태에서 약관상의 자살부책조항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법원은 이 조항을 계약자가 오해하고 악용하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도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박세민, 앞의 논문, 365면).

없고, 평소 자살자에게 내재되어 있던 자살경향에다가 순간적인 상황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동기가 추가됨으로써 우발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의 자살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고의사고 면책’ 규정의 기본취지,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도덕적 위험의 방지라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거나 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도 위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 면책의 예외사유로서 ‘정신질환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자살한) 경우’란 자살자가 평소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의 징후와 준비과정을 거쳐 자살하는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위의 정신질환상태에는 외인성(外因性), 내인성(內因性) 외에도 심인성(心因性)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포함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고의, 자살사고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행위의 객관적 태양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자살을 추정할 수 있는 행위, 예컨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달리는 자동차나 기차에 뛰어들거나, 음독을 하거나, 목을 매거나, 차량 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의사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음주나 약물복용,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상실되거나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아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을 잃어버린 일종의 의사무능력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라 함은 그 상태를 초래한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한 자살을 뜻하고, 보험자가 그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정신장애나

의식장애와 자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예컨대, 피보험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할 당시에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을 '선택'한 경우(이른바 決算自殺¹⁴⁾을 한 경우)라면, 그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정신병을 이유로 그 자살에 대해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¹⁵⁾

다만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에 의거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4.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데에 있다.¹⁶⁾

보험상품에서 어떤 사유를 담보대상으로 삼고, 면책사유로 볼 것인가는 보험자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의 회수, 유형 등을 토대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는 부분인데,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사고를 당하고 그 결과가 중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의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건 아니건 간에 보험회사가 이러한 손해를 상해보험상품의 담보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위험의 균질성에도 반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14)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주의 깊게 교량하고 이를 토대로 죽기로 결정한 자살을 이른바 '決算自殺'이라고 한다(양승규·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제4권 제2호, 2010, 215면).

15) 양승규·장경환, 앞의 논문, 211면.

16) 양승규, "정신질환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6.23. 2015다5378 판결-과기환송", 손해보험 제565호, 2015년 12월, 75면.

상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고의, 자살과 별도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면서 상법 제739조는 제732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해보험에서는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해보험약관에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다면 이는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63조 본문에 의하여 무효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들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상태에 있을 때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예컨대 심신상실자 등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의 상태에서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타인의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처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과는 관계없이(즉,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신상실·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험약관에 심신상실·정신질환 면책조항이 있다고 하여 심신상실자 등이 항상 보험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면책조항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는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와 모순되어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¹⁷⁾

그렇다면 상해보험약관에서 고의자살과 별도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위 면책조항에 의거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어 결과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여 그 면책사유가 무조건 고객에게 불리하게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자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마당에 그렇게 해석하면서까지 자살사고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해 줄 필요도 없으므로,¹⁸⁾ 위 면책사유로 인하여 자살과

17) 장경환,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4호, 2008, 346면.

관련한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결론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¹⁹⁾

특히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예외조항(자살부채조항)을 두고 있고, 계약자가 위의 보험약관상 자살부채조항을 오해하고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이 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이러한 자살부채조항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점에서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 건 대법원 2015다34956, 34963 판결은 자살 예방적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0만 명당 2000년 16.6명, 2004년 23.7명, 2007년 28.7명, 2011년 33.3명을 기록하면서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는 오명을 안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²⁰⁾ 우리나라는 매년 약 15,000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에 40명, 36분마다 1명꼴로 자살하는 셈이고, 이는 21세기의 대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미국 뉴욕 9·11테러 당시 사망한 약 3000명의 다섯배에 이르는 숫자이기도 하다.²¹⁾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자살로 인해 치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6조 47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하였다.²²⁾

18)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해나 자살한 것으로 확인된 액수가 2012년도에는 356억원에서 2013년도에는 517억원으로 45% 정도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세 지속, 1인당 사기금액 급증", 2014년 3월 19일).

19)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책임면제사유(exceptions)와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에서 위험을 담보하지 아니한 담보위험제외사유(exclusions)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상해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사유, 즉 상해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에 앞서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5다5378 판결이 '상해보험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밝힌 것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담보위험제외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양승규, 앞의 평석 78면).

20) 박세민, 앞의 논문, 353면.

21) 중앙일보 2014년 11월 6일자 기사.

보건복지부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의료계와 종교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와 계도, 상담, 후원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가족과 학교, 직장 모두에서 구성원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졌고,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여차하면 세상을 버리면 그만’이라는 안이하고도 현실도피적인 생각이 만연해진 탓일 수도 있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대응하는 노후대비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일 수 있다.²³⁾

그러나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너무나 크다. 한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 그로 인하여 남은 가족과 친지, 친구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 속에 살게 되고, 심지어 일부는 그를 따라 자살하기도 하는데, 이를 사회 전체로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중 상당수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동료 등의 자살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뜻하고,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수치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자살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오죽하면 자살했겠느냐’는 식으로 자살한 사람을 동정하거나 두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로 인해 보험금 수령이라는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이는 가뜩이나 사회전체가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상황에서 보험제도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생명과 돈을 맞바꾸라고 부추기고, 자살을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빚은 본인이 떠안고 가고, 남은 가족들은 보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고 다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 등을 위장하여 자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²⁴⁾ 이렇게 되면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를 당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험

22) 헤럴드경제 2015년 9월 9일자 기사.

23) 전문가들은 자살률 증가의 근본원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 분야에 자리잡은 무한경쟁시스템, 불완전한 사회안전망과 소득불평등 구조(빈부격차) 심화 등을 꼽고 있고 여기에 더해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큰 한국 특유의 문화가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헤럴드경제, 앞의 기사).

단체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킨다는 사회보장적,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끔찍한 수단을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일확천금을 얻도록 해주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²⁵⁾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까지 생각해 보면 자살한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살한 사람의 유족들을 보험금으로 위자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회전체적으로 끔찍하고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자살부책조항의 적용을 좀더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이상,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어서 자살부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을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자살이 ‘피보험자의 고의자살과 별개의 면책사유인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자살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2015다34956, 34963 판결은 의의가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면책조항을 폭넓게 적용할 경우 보험자의 면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선고 2012가합20738 판결은, 피보험자가 직선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17억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었고, 그중 9억여원은 사채였으며, 사망시점까지 사채에 대한 이자는 전혀 납입하지 못하였고, 감정인은 망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망인이 단기간 내에 보험가입금액 합계가 28억원이 다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장내용도 상해사망보험금에 집중되어 있고, 망인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불과 2주 후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을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03.20. 선고 2013나2025666 판결은 유족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족측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다212848 판결은 유족측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5) 사체를 얻은 사람들이 사체업자들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후 자살하거나 자해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살과 보험이 연계될 경우 얼마나 위험하고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²⁶⁾ 사고와 정신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²⁷⁾ 등의 제반사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⁸⁾

IV. 결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살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자살부채조항의 적용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자측이 자살부채조항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 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자살부채조항의 악용을 저지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다 34956, 34963 판결은 타당하다.²⁹⁾

26)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 탓에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천지일보, 2016년 4월 8일자 기사).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피보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보험자가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인지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곧바로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닐 것이다.

27)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과 무관하게 입은 부상, 예컨대 정신질환자가 버스타승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기차역 플랫폼에 서 있는 정신질환자를 누군가가 선로로 떠밀어 정신질환자가 달리는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등에는 사고와 정신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의거하여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을 것이다.

28)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정신질환 등을 가진 자가 사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 정신질환의 요인만으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다양한 외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피보험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무시한 채 단순히 정신질환이 사망과 결부되었다는 것만으로 생명보험약관상 보상대상인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견해가 있다(김정주,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 지급의 문제”, 보험법연구 제4권 제2호, 2010).

29)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실시된 후, 하급심에서 위 면책조항을 토대로 한 판결이 속속 선고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대전지방법원

물론 대법원이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지, 사고와 정신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5.10.30. 선고 2015나100318 판결은 피보험자가 밀폐된 차량 안에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3년 5개월 전부터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사고발생 8개월 전까지는 꾸준히 심리요법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후 사고발생 4개월 전까지는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3개월 정도 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다시 위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요법치료와 17일 간의 투약치료를 받았고, 사고발생 1개월 전에 의사에게 우울감, 초조, 스트레스 양상 등으로 힘들었다고 호소하며 심리요법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사고직전에는 의사와 자살시도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으며, 망인은 사고무렵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더욱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사고 3일 전에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보고 싶다고 하였고, 사고 전날에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울증상의 재발을 의심할 수 있고,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은 중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보아 면책사유로서의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에 해당되지 않지만,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별개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면책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위 판결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함). 울산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5가합829 판결도 우울증 환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위 사고를 피보험자의 고의자살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별개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하였다(확정판결임).

참고문헌

교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제2판, 중앙문화사, 2005
-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2016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2판, 박영사, 1999
-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논문

- 고택근,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4권, 2008
- 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경과후의 자살 - 최근 일본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69집, 2004
- 김정주,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 지급의 문제”, 「보험법연구」 제4권 제2호, 2010
-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의 자살부책 조항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6권, 2015
- 양승규, “생명윤리와 자살약관에 대하여”, 「보험법연구」 제2권 제2호, 2008
- 양승규, “정신질환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6.23. 2015다5378판 결. 파기환송”, 「손해보험」 제565호, 2015년 12월
- 양승규·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제4권 제2호, 2010
-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69권, 2004

장경환,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정신장애와 의식장애”,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4호, 2008

기타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세 지속, 1인당 사기금액 급증”, 2014년 3월 1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

중앙일보 2014년 11월 6일자 기사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천지일보 2016년 4월 8일자 기사

헤럴드경제 2015년 9월 9일자 기사

<Abstract>

Review on suicide of the insured and exemption clause on mental illness

- Focused on 15thOctober, 2015, Supreme Court with case number of 2015da34956, 34963 -

Hye-Young, Kim

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the insurer could be exempted from its insurance liability only if the insured accident has been intentionally caused by the insured in case of the life insurance. What led the insured to being intentionally should be under normal circumstances. Accordingly, if the insured hurt itself under its mental illness or the situations similar to such which prohibits it from being free to decide has caused its death, it applies to the contingency which was not made on purpose by the insured, which should be undertaken by the insurer to indemnify the insured's loss.

However, the insured could be exempted from its insurance liability based on the exemption clause (the "Exemption Clause") in the terms of the accident insurance which allows that the insurer be exempted from the loss caused by the mental illness or insanity of the insured, of which clause was separately addressed from the exemption clause for the insured's intention or suicide. In this regard, on 15thOctober, 2015, Supreme Court with case number of 2015da34956, 34963 recently accepted that the Exemption Clause was binding and effective. It is likely that the Exemption Clause is not unfair to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as what type of the risk undertaken by an insurer is determined subject to the class or type of loss, damage, or liability. Therefore, the above ruling made by the Supreme Court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 of which point is that the insurer was exempted from its insurance liability pursuant to the Exemption Clause in case the circumstances where the insured was not freely able to decide due to its mental illness have led to the insured's death.

Key Words : accident insurance, the Insured's suicide, insanity or mental illness, mental disor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insured was not freely able to decide